

2009. 12. 18(금) : 10:00~

제163회 거창군의회 (2차 정례회)

거창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심 사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 【 목 차 】

1. 거창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 2
2.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3.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4. 거창군 헌혈장려 조례안 ..... 10
5.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조례안 ..... 13

# 거창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12. 7.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12. 8.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12. 15.
- 마. 의안번호 : 제2009-57호

## 2. 제안이유

아동·여성에 대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이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구성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아동·여성보호 안전망 구축 등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군수의 책무 및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

축에 관한 사항을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책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거창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다.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함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 4.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성폭력·가정폭력 등 아동·여성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차원의 정책효과 제고 및 피해자 지원전달체계 효율화 등으로 아동과 여성 보호를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에 관한 책무와 그 책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 안 제14조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음.

- 이 조례안의 제정은 최근 아동·여성 가정폭력 사건 등 아동·여성 대상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아동·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2009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12. 7.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12. 8.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12. 15.
- 마. 의안번호 : 제2009-58호

## 2. 개정이유

부서의 분장 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위치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는 물론 주민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부서의 분장 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제3조, 제10조).
  - 분장사무 부서변경 : 기획감사실장 → 행정과장
    - 행정전산·정보화 및 통신에 관한 사항
  - 부서 분장사무의 명확화
    - 재 무 과 : 부서의 분장사무 수정·보완

- 민원봉사과 : 토지관련 민원에 관한사항 → 새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
- 1010추진단 : 승강기산업 클러스터조성 → 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
- 보건소 : 가족계획 → 출산장려

나.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위치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함 (안 제8조, 별표).

○ 위치변경

- 보건지소 : 용양면 보건지소 등 2곳
- 보건진료소 : 거기 보건진료소 등 6곳

○ 명칭변경

- 보건진료소 : 구송 보건진료소 → 봉산 보건진료소

#### 4.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분장사무의 부서변경과 부서 분장사무의 명확화를 위하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위치와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12. 7.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12. 8.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12. 15.
- 마. 의안번호 : 제2009-59호

### 2. 개정이유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 전달체계 개선 계획(사회장애인복지과 - 25343호(2009. 11. 04))에 따라 업무조정으로 본청과 읍의 정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가. 업무조정으로 본청 ⇔ 읍 정원조정

○ 본 청

- 일반직 6급 이하 계 : 212명 → 213명(증 1명)

○ 거창읍

- 일반직 6급 이하 계 : 34명 → 33명(감 1명)

#### 4.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업무조정으로 본청과 읍사무소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 소수의견요지 : 해당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 거 창 군 헌 혈 장 려 조 례 안 ]

## [ 심 사 보 고 서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12. 1.
- 나. 발 의 자 : 임종귀 의원 외 1명
- 다. 회부일자 : 2009. 12. 8.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12. 15.
- 마. 의안번호 : 제2009-56호

### 2. 제안이유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장려”,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연도마다 헌혈장려 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 4조).

-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헌혈권장활동 및 헌혈 장려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 엄수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

#### 4.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따라 국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거창군 주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권장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는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8조에서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 준수 의무규정을 정하였음.

- 최근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등 혈액수급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증가되어 국민들의 지속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 03. 28.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8. 03. 31.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12. 15
- 다. 의안번호 : 제2008-11호

## 2. 제정이유

우리 군 공유재산에 대한 세입과 세출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공유 재산 관리는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설치 근거 및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
- 나. 세입 항목을 규정함(안 제2조).
  - 일반회계 전입금,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등

다. 세출 항목을 규정함(안 제3조).

○ 집중재산의 취득, 공공청사 및 부지의 취득, 토지합병·분할 수수료 등  
라.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함(안 제4조).

마. 예비비를 규정함(안 제5조).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함

#### 4.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안건으로서

○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연체료 및 변상금, 국도비보조금 등” 이며,

- 안 제3조에서 세출은 “활용가치가 있는 집중재산의 취득, 공공청사 또는 공공청사 부지의 취득 등” 으로 규정되어 있고,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안 제5조에서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 규정을 두었는데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임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조례안에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규정을 두지 않고 강제규정을 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그리고 「지방재정법」에서 특별회계는 특정한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이 있을 때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국·공유재산의 세입 규모를 보면,
  - 2006년도에 대부료, 변상금, 매각 등 세입이 431,406천원이며, 2007년도에 대부료, 변상금, 매각 등 세입이 281,841천원인데,
  - 공유재산의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2007년도에 읍사무소 신축, 보건지소 등 공유재산관리에 소요된 예산이 4,974,000천원 이고, 2008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공유재산관리에 소요 되는 세출예산은 주상면 행정타운 신축, 청사 천정 교체 작업 등에 2,251,542천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음.

- 이러한 것을 볼 때 공유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등 자체 수입원이 빈약하여 세출에 필요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지 않고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실정임.
  -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이 있을 때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세입규모를 볼 때 특별회계의 자체수입원이 빈약하여 회계가 형식으로 운영되거나 부실화 될 우려가 있고, 또한 군이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특별회계의 수입원이 빈약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없이는 공유재산의 취득 등을 할 수 없으므로 매년 어느 정도의 전입금액과 몇 년 동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전국 도·시·군·구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현재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4개 시·군(경기도 김포시, 남양주시, 안성시, 강원도 평창군) 뿐인데, 우리 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하여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가. 발 의 자 : 총무위원회

나. 수정내용 : 붙임과 같음

- 현행 8개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공유재산특별회계와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13개조로 확대하여 규정 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명 :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조 례안	제명 :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제정안과 같음)
<신설>	제2조(자금의 운용 및 관리) 거창군 공유 재산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운용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중 보존부적합 토지를 매각 하고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를 매입 하여 토지의 고부가가치로 수익증대 2. 토지의 활용가치를 위하여 분할 및 합병 3. 산재된 공유재산의 집단화 4.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
제2조(세입) 거창군 공유재산관리특별회 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2. (생략) 3.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 관리사무의 수입에 따른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 연체료·변상금 및 부동산 신탁수입금 중 거창군 귀속분 4. ~ 6. (생략)	제3조(세입) 특별회계----- ----- -----. 1.~ 2. (제정안과 같음) 3. ----- ----- ----- --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 4. ~ 6. (제정안과 같음)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1. 활용가치가 있는 <u>잡종재산</u> 의 취득 2.~ 5. (생략)	제4조(세출)----- -----. 1. ----- 일반재산 ----- 2.~ 5. (제정안과 같음)
<신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이 특별회 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과 장을 징수관 및 경리관으로, 재산관 리업무 담당주사를 지출원 및 수입금 출납원으로 각각 지정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7조(금고의 지정)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군 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4조(전출금지) 이 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금지한다.

제8조(자금의 전용금지) 이 특별회계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세입에 예상 외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제5조(예비비) (생략)

제9조(예비비) (제정안과 같음)

제6조(예산의 편성 등) 이 조례에 의한 예산의 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예산의 편성 등) ----- 따른 ----- 따른다.

<신 설>

제11조(예산의 집행) 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하기에 앞서 사전 군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관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대장을 비치하고 자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관리) ----- 갖춰 두고 ----- 증명서류-----

제8조(시행규칙) (생략)

제13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